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1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6.

발 의 자 : 서지영 · 김대식 · 곽규택
이인선 · 박수영 · 김승수
이현승 · 최수진 · 백종현
정동만 · 박충권 · 이성권
성일종 · 박성훈 · 서천호
박덕흠 · 조승환 · 김용태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치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과 돌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고,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유아들 중 정서적 · 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, 이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이러한 유아들에 대한 상담, 치료, 생활지도 및 개별적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정서적 · 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건강히 성장하고,

교원의 유아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치원장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에게 필요한 치료나 상담·학습지원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, 원장이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유아를 일시적으로 분리시켜 개별유아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 그리고 이를 위해 원장은 개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,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신설 등).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3제1항 중 “인권을”을 “안전과 인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”를 “원장 등 교원의 다음 각 호에”로, “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”를 “행위에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유아생활지도
2.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 및 상담·학습지원 등
3. 제21조의5에 따른 개별유아교육지원

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의4 및 제21조의5를 각각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로 하고,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4(유아의 정서·행동 지원 등) ① 원장은 소속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치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(이하 이 조에서 “전문가”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 유아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-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의 치료 권고 또는 상담·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유아가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및 전문가의 기준·자격,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 또는 상담·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5(개별유아교육지원 등)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행위가 원장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를 다른 유아들과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(이하 “개별유아교육지원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별유아교육지원은 수업 상황, 해당 유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사용하되, 개별유아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② 원장은 유아가 개별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개별교육지원을 하였음에도 원장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유아를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

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자는 귀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원장은 개별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, 개별유아교육지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매년 개별유아교육지원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, 개별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비용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의3(원장 등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)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<u>인권을</u>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.	제21조의3(원장 등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) ① ----- ----- <u>안전과 인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② 제1항에 따른 <u>교원의</u> <u>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</u> 대해서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제3호,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.	② <u>원장 등 교원의</u> <u>다음 각 호에</u> ----- <u>행위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 설>	1. 제1항에 따른 <u>정당한 유아생활지도</u>
<신 설>	2.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<u>치료권고 및 상담·학습지원 등</u>
<신 설>	3. 제21조의5에 따른 <u>개별유아 교육지원</u>
<신 설>	③ <u>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</u>

<신 설>

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의4(유아의 정서·행동 지원 등) ① 원장은 소속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치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(이하 이 조에서 “전문가”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 유아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의 치료 권고 또는 상담·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유아가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및

<신 설>

전문가의 기준·자격,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 또는 상담·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5(개별유아교육지원 등)

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행위가 원장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를 다른 유아들과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(이하 “개별유아교육지원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별유아교육지원은 수업 상황, 해당 유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사용하되, 개별유아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원장은 유아가 개별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개별교육지원을 하였음에도 원장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들의 학

<u>제21조의4</u>(보호자의 의무 등) (생략) <u>제21조의5</u>(교원 개인정보의 보호) (생략)	<u>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유아를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자는 귀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 <u>③ 원장은 개별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, 개별유아교육지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 <u>④ 교육감은 매년 개별유아교육지원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, 개별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비용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.</u> <u>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<u>제21조의6</u>(보호자의 의무 등) (현행 제21조의4와 같음) <u>제21조의7</u>(교원 개인정보의 보호) (현행 제21조의5와 같음)
---	---